

# 학습자료(3대 법정교육-1(성희롱예방교육 제외))

## 1차시 장애인인식개선교육

### \*장애인학대의 특징

-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학대임에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.
-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.
- 학대를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일로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.

### \*장애인에 대한 정신적·정서적 폭력

- 외부 접촉의 배제, 소외시킴, 따돌림 등 장애인이 정서적으로 소외를 느끼게 하는 경우
-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, 폭언 상스럽거나 혐오스러운 말로 고통을 주는 경우
-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특정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경우

### \*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종사자의 역할

- 장애를 이유로 한 따돌림, 비하발언 등 정서적 학대를 특히 유념한다.
- 학생들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, 인식개선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.
- 학대 징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다.

### \* 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

- 다양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.
-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도록 한다.
- 도움을 주기 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도록 한다.

### \*시대와 사회에 따른 장애의 정의

- 중세유럽 : 장애인은 신에게 벌을 받은 사람
- 조선시대 :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,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.
- 세계보건기구 : 장애인은 선천적, 후천적으로 신체 및 정신 능력에 결함이 발생,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갖추지 못한 모든 사람
- 장애인복지법 : 장애인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

### \*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주요 내용

- 장애인 노동 경력과 보수, 통상적인 삶 영위
- 장애인 자아 실현
- 장애인 생존권 노동권 보장

### \* 비할당 고용제

- 비할당 고용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노동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형태이다.

- 고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다.
- 장애인의 직무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.

\*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

-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한다.
- 장애인 인권교육/학대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- 당사자 권리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힘을 배양한다.

\*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

- 사회복지종사자
- 의료인 및 응급구조원
- 상담소, 보호기관 종사자

## 2차시 개인정보보호법

\*동의 받을 때 고지 의무 사항

- 수집 • 이용 목적
- 수집 항목
- 보유 • 이용 기간

\*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이 가능한 경우

- 범죄의 예방 및 수사
-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- 교통 단속

\* 개인정보 유출 통지에 대한 내용

- 1건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유출관련 사실을 통지한다.
- 개별 통지방법으로는 서면, 전자우편, 전화, 팩스, 문자전송 등
- 통지 내용으로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,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,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법, 사업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, 담당부서 및 연락처 포함해야 한다.

## 3차시 퇴직연금제도 교육

\*퇴직연금제도

-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믿을 만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퇴직금을 맡겨 놓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해도 매일 염려가 없다.
-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.
-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,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

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제도이다.

\*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

-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로 대표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
-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
-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안정은 노후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됨

\*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

-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·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